

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3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4월 3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문화시설추진단과 지역발전본부 등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미디어 재단 신설에 따라 폐지된 교통방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함(안 부칙 제6859호 제2조)

- 1) 문화시설추진단: 2020년 6월 30일 → 2021년 6월 30일까지
- 2) 지역발전본부: 2020년 8월 18일 → 2021년 8월 18일까지

나. 교통방송 폐지('20. 2. 17.字)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, 제9조의2, 제10조 및 제11조,
- 3)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의2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20. 3. 19.~3. 23.)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조례 제685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20년 6월 30일” 및 “2020년 8월 18일”을 각각 “2021년 6월 30일” 및 “2021년 8월 18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07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교통정보의 신속·정확한 제공과 교통지식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도권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교통방송(이하 이 절에서 “교통방송”이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u></p> <p><u>② 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(상암동)에 둔다.</u></p> <p><u>③ 교통방송의 영문표기는 Seoul Traffic Broadcasting System으로 하되, “tbs”로 약칭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<u>제108조(대표) 교통방송에 대표를 두고, 대표는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<u>제109조(소관사무) 대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u></p> <p><u>1. 교통방송을 통한 교통정보·교통지식의 제공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2. <u>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방송 프로그램의 제작·편성 및 운영</u></p> <p>4. <u>광고방송의 편성·조정</u></p> <p>5. <u>그 밖에 교통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부칙 &lt; 제6859호, 2018. 5. 3.&gt;</p> <p>제1조 (시행일) (생략)</p> <p>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21조제1항의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<u>2020년 6월 30일</u>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<u>2020년 8월 18일</u>까지로 한다.</p>	<p>부칙 &lt; 제6859호, 2018. 5. 3.&gt;</p> <p>제1조 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---  -----  -----<u>2021년 6월 30일</u>  -----  -----  <u>2021년 8월 18일</u>-----.</p>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**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**3. 미첨부 사유**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행정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 
추가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**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문제호(☎ 2133-6724)**